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19.12.2.(월) 10:00]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1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17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9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5일

3. 제안이유

본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신청,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9. 11. 20. ~ 11. 25. (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이민석의원외 12인으로부터 2019.11.19.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호로 2019.11.25.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제정취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마포구 지정 의사상자는 1983년 최초 의사자 지정부터 총 8명(의사자)이 지정되었으며 2019.10월 기준 마포구 거주 유가족은 3명임. 참고로 서울시 전체 의사자 수는 130명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의사상자의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과 서울특별시 특별위로금 지급 이외에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되는 바는 없었음.

〈표 1〉 연도별 마포구 의사자 발생 현황

년도	계	1983	2004	2005	2006	2010	2011	2012	2016
사 유 (명)	8명	익사 (1)	익사 (1)	익사 (1)	익사 (1)	익사 (1)	익사 (1)	익사 (1)	화재 (1)

(출처: 마포구)

- 그러나 국회에서는 1970.8.4.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약칭: 의사상자법)」¹⁾을 제정하여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중대한 장애를 입은 자를 국가가 보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8.3. 현행 제명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로 전부 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하고자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6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강동구 등 14개 구³⁾에서 조례 제정이 된 바 있음(2019.11.기준).
- 이에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살신성인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2)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인정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표창과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공적 게재 등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4)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 1970. 8. 4.] [법률 제2216호, 1970. 8. 4., 제정]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09호, 2007. 8. 3., 전부개정]

3)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이상 14개구)

4)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⁵⁾ 및 제15조⁶⁾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⁷⁾와 제17조의2의 규정 등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에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해당하는 구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생각됨.

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6)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중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8. 4.>]

7)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사자 및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고시**(의사자) : 201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시행 2019.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9호, 2018.12.24., 제정.]
201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21,728,000원**으로 한다.

* **별표 2**(의상자) :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100/100(제1급) ~ 5/100(제9급)로 9등급으로 구분 보상